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2,224,585	7,566,738
일반회계		234,702,560	7,041,077
특별회계		17,522,025	525,661
	기타특별회계	17,522,025	525,66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68,181	23,045
	주택사업특별회계	361,406	10,842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2,100	5,4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14,553	57,43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1,880	3,956
	주차장특별회계	335,900	10,077
	수질개선특별회계	13,328,005	399,8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00	6,000

- 제 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08,594천원으로 한다.
-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